

# 예산총칙

2021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709,191,164	21,275,735
일반회계	676,265,159	20,287,955
특별회계	32,926,005	987,780
공기업특별회계	17,812,598	534,378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17,812,598	534,378
기타특별회계	15,113,407	453,402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51,199	1,536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223,925	6,718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904,549	27,136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817,740	24,532
하천골재채취운영 특별회계	2,223,000	66,690
수질개선 특별회계	9,069,674	272,090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	1,823,320	54,700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9,128,509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36,9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